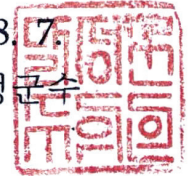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69
----------	------

제출일자 : 2018. 7.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등을 운행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대상마을 선정(안 제3조)

다. 이용자격(안 제4조)

라. 운행방법(안 제5조)

마. 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안 제6조)

바.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안 제7조)

사. 비용의 신청 및 지급(안 제8조)

아. 비용지원 결정(안 제9조)집

자. 지원의 중단(안 제10조)

차. 사후관리(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고1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국비 및 시비, 군비

다. 기 타

(1) 조례안

(2)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수용

(4) 규제심사 : 의견 없음

(5)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

(6) 비용추계서 : 첨부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의 운행과 행복택시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 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 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
2. “행복택시”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3. “행복버스”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율적으로 운수업체나 자조조직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맡겨 그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 등의 여객운송용 차량을 말한다.
4. “행복택시 등”이란 행복택시 및 행복버스를 말한다.
5. “행복택시 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된 쿠폰을 말한다.
6. “마을대표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마을 선정)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관할 읍 면장으로부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그 지역에서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로 여건 등에 따라 특히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을을 관할 읍 면장의 의견을 받아 선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격)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3. 도동서원 관광객

제5조(운행방법)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 면소재지 및 그 소재지에 연결한 읍 면 소재지의 전통시장 또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직장,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로 하고, 제4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 이용하는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도동서원과 구지면사무소 사이로 한다.

③ 행복택시는 이용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시, 날짜, 시간, 장소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한다.

④ 행복택시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시 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제6조에 따른 이용권 교부와 동시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일반인 기준 운임 범위 내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 운행요금은 택시미터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부담요금 외 차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⑥ 군수는 행복택시의 운행시간 및 승하차 장소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 ① 군수는 월1인2매를 기준으로 이용권을 발급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도동서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은 매월 10일까지 다음 달 해당 지역에 필요한 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적정한 매수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20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교부하며 읍·면장은 이를 25일까지 마을대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관할 읍·면장이 직접 지급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지급받은 이용권의 배분방법을 정하여 해당 마을주민에게 배분 하되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행복택시 이용권 교부내역(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해당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읍·면장은 그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배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용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양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그 양도자 및 양수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관내 모든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지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운송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8호 서식)를 택시 안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행복택시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지정받은 행복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부정청구 등으로 그 운송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군수가 부담하여야 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달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택시 요금 영수증과 제6조에 따른 이용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첨부 각 서류의 형식적·내용적 흠의 존·부
2.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운송사업자를 지정하면서 그와 정산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되, 제5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부담요금 부분까지를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행복버스의 운영주체가 행복버스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등의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운행 대상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나 행복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은 행복버스의 운송주체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주체는 군수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					
마을명					
마을대표자 성명	(인)		연락처		
신청사유					
신청내용	세대수	주민수	차량보유수	승강장까지 거리	소재지까지 거리
달성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붙임: 행복택시 이용주민 명단, 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최초가입자만 작성) 달성군수 귀하					

행복택시 이용주민 명단<○○면○○리>

[illegible]

* 신청마을 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마을명)	○○읍(면) ○○길(로) ○○ (○○마을)		연락처
신청내용	주 이용목적	1. 병원진료 2. 시장 3. 친인척방문 4. 기타	대상구분	1. 65세 이상 노약자 2. 학생(유치원생, 노약자) 3. 환자 4.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달성군(교통)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행복택시 이용자 현황 및 자격, 통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행복택시이용대상자 선정 기간 중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행복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행복택시 행복택시 신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

마 을 명			
마을대표자 성명	(인)	연 락 처	
신청매수		거주 인구수	
추가 발급자	성명	주소	발급사유
	※ 허위 기재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인구수 및 신청매수 확인여부	행복택시 신청매수 및 거주인구수 확인함. 읍면담당자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행복택시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음 · 면장 : 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월)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군)						
연번	마을명	발급일자	발급매수 (인구수/발급매수)	수령자	담당자 확인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택시 이용권 교부대장(00면)

이용권			수령자			
월	번호	매수	대상지역	대표성명	서명	※회수
계		총 매				총 매
계		총 매				총 매
계		총 매				총 매

[별지 제6호 서식]

행복택시 이용권 교부내역(월분)

☐ 리

연번	이용권		수령자	
	번호	매수	주소	성명
계		매		
	~			
	~			
	~			
	~			
	~			
	~			
	~			
	~			
	~			
	~			

마을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

신 청 인	개인/법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차량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자택)	
				H P)	
행복택시참여 용 전화번호		부제 조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과 관련된 범죄경력 및 경력관련 조회 등에 사용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달성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월) 행복택시 운행일지 (차량번호:)

운행 일자	이용권 번호	탑승자(대표)			승차 총인원	승차지점	하차지점	운행요금	비고
		마을	주소	성명					

[illegible]

【참고1】

【 관련 법령 】

지 방 자 치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하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첨부1]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내용 및 관련조문

○ 비용의 지원 : 제8조 및 제9조

나. 비용 발생요인

○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주민 등의 이동권 확보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
-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행복 택시 운영비	258,000	258,000	258,000	258,000	258,000	1,290,000
	국비 5,000	국비 5,000	국비 5,000	시비168,000	시비168,000	
	시비 168,000	시비 168,000	시비 168,000	군비 9,000	군비 9,000	
	군비 4,000	군비 4,000	군비 4,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3년간 지원) 및 시비, 군비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예산확보							
기금회수 및 이자							
세 출		258,000	258,000	258,000	258,000	258,000	1,290,000
수요응답형대중 교통체계사업		158,000	158,000	158,000	158,000	158,000	790,000
농촌형교통모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258,000	258,000	258,000	258,000	258,000	1,290,000
의존 재원	소 계	218,000	218,000	218,000	168,000	168,000	990,000
	보조금	218,000	218,000	218,000	168,000	168,000	99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000	40,000	40,000	90,000	90,000	300,000
	군비	40,000	40,000	40,000	90,000	90,000	300,000

3. 부대의견 : 국비지원(3년)이후 예산확보로 현행수준의 사업유지

4. 협의사항

○ 2019년 이후 : 사업명 변경(행복택시사업)

5. 작성자

○ 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선연(053-668-3012)